

제358회 임시회
2017. 8. 30.(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충청북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이광희 의원 등 7인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8월 21일
- 회부일자 : 2017년 8월 24일

3. 제정이유

- 최근 장애인 인권 관련 다양한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한 인권 증진의 필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구현하기 위함.

4. 주요내용

- 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안 제3조)
- 나.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시행 규정 (안 제5조)
- 다. 도 내 장애인 대상 3년 단위 실태조사 규정 (안 제8조)
- 라.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 업무의 위탁 규정(안 제12조)
- 마.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22조)
 -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 (위원 중 장애인 2분의 1 이상)

5. 검토의견

가. 주요 내용 검토

○ 본 조례안은,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장애인 확대 등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보장하기 위해 제안되었음.

○ 본 조례안은,

총 제3장 제2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에는 조례의 목적, 용어, 도지사의 책무, 장애인의 권리 등을 규정하고,
-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에는 5년 단위로 “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매년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대해 규정함.
- 안 제8조는 실태조사에 대한 규정으로,
 -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실태 조사와 연계하여 매 3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특히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대면(對面) 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정하고, 민간 조사원을 위촉·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 조사의 부실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음.
 - 또한 실태조사 결과를 충북도의회에 보고하고, ‘충청북도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 개정, 폐지 등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여, 실태조사결과를 통한 제도 및 정책 개선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 안 제12조에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에 따라 설치한 ‘충청북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5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도 차원의 필요 사업을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안 제13조부터 안 제22조에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장애인인권보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음.

나.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제정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 내용 및 절차상으로도 세 차례에 걸친 토론회와 입법예고 및 이메일을 통한 충청북도 내 18개 장애인 단체의 별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고, 도 담당 부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제출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참고자료> 충청북도 장애인 현황 : 총 94,688명 (2016. 기준)

장애유형	명수	장애유형	명수
지체	47,307	신장	2,509
시각	8,983	심장	153
청각·언어	11,468	호흡기	366
지적	9,653	안면	90
뇌병변	8,667	장루·요루	580
자폐성	608	뇌전증	257
정신	3,699	간	348